

# 대법원 2018다294179 추심금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451)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자녀 A, B의 보험금을 친권자(母)인 피고가 대신 수령한 이후, 자녀 A, B의 채권자인 원고가 친권 종료에 따른 자녀 A, B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고 그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심판결이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압류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은 잘못이지만,

A는 추심명령 송달 전에 피고의 보험금 반환의무를 적법하게 면제하였고, B의 보험금은 피고가 양육비 등으로 정당하게 지출하여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음[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

## 1. 사안의 개요

### 가. 사실관계

- ○○○(이하 '망인')은 피고와 혼인하여 자녀로 A, B를 두었는데, 망인과

피고는 이혼함

- 보험회사인 원고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 망인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자, 피고는 보험금수익자인 A, B를 대신하여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함
- 이후 망인이 단순 추락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투지자살한 것이라고 밝혀져, 원고는 A, B를 상대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음
-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A, B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나. 소송의 경과

- 1심: 원고 패
- 원심: 원고의 항소 기각
  -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압류할 수 없는 권리임
  - 설령 자녀의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A,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반환 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소멸하였음. ① A는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 전 피고의 보험금 반환의무를 면제함. ② 피고는 B의 보험금을 B를 위하여 모두 지출하여 반환할 보험금이 없음
- 원고 상고

## 2. 대법원의 판단

## 가. 쟁점

- 친권자가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친권이 종료하였을 때 자녀가 친권자에게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압류할 수 없는지 여부
- 이 사건에서 A, B가 피고에게 청구할 보험금이 남아 있는지 여부

##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

## 다. 판단 근거

- 친권자는 자녀가 그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데(민법 제916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친권자는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인도하거나 이전할 의무가 있음
- 친권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자녀의 통상적인 양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친권자가 무자력이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현저한 양육비용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위와 같이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 이에 대응하는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음
- 원심이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압류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잘못임
-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甲이 피고의 보험금 반환채무를 적법하게 면제하였고, 乙의 보험금은 피고가 정당하게 모두 지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음

### 3. 판결의 의의

- ▣ 친권자가 자녀의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데, 친권이 종료한 경우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재산적 법률관계에 관해서는 그동안 판례가 없었음
- ▣ 이 대법원 판결은 **친권자가 자녀의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친권 종료 시 그 돈 중 정당하게 지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녀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자녀의 그와 같은 반환청구권이 재산적 권리로서 압류될 수 있는 권리임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임**